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4-12

수 원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누12212 취득세부과처분등취소
	2020누12229(병합)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고, 피항소인	[redacted]시장
제 1 심 판 결	[redacted]법원 2020. 5. 28. 선고 2019구합63790, 64847(병합) 판결
변 론 종 결	2020. 11. 18.
판 결 선 고	2021. 2.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9. 1. 11.에 한 별지 제1 목록 기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4-12

각 부과처분과 2019. 3. 22.에 한 취득세 37,359,71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1,850,680원(가산세 포함)의 각 세액결정통지 및 2019. 4. 4.에 한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각 용지의 취득 및 관련 지방세 감면

1) 이 사건 각 용지의 취득

○ 원고는 조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0. 12. 28. B공사와 C공사(이하 두 공사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D공사'라고만 한다)로부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인 [redacted]시 E리(이하 'E리'라고 한다) P 일원 F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고 한다) 내 임시지번 G, Q, R, H 공장용지(면적 합계 31,803㎡, 이하 '이 사건 각 용지'라고 한다)를 대금 16,108,694,000원에 매수하는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대금을 아래 표와 같이 분할하여 지급하되,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 후 증감된 면적 등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구분	지급기일	금액(원)
계약금	2010-12-28	1,610,869,400
1차 중도금	2011-08-20	1,610,869,400
2차 중도금	2012-04-20	3,221,738,800
3차 중도금	2012-12-20	3,221,738,800
4차 중도금	2013-08-20	3,221,738,8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4-12

잔 금	2014-03-20 [2014-12-31]	3,221,738,800 [2,310,139,800]
합 계		16,108,694,000 [15,197,095,000]

"[]"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후 변경된 부분이다.

○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계약금과 1~4차 중도금을 순차로 지급하였다.

○ 원고와 D공사는 2014. 3. 19. 이 사건 매매잔금의 지급기일을 '2014. 10. 31.'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와 D공사는 2014. 12. 1. 이 사건 매매잔금의 지급기일을 '2014. 12. 31.'로, 매매잔금을 '2,310,139,800원'으로, 총 매매대금을 '15,197,095,000원'으로 각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위와 같이 변경된 계약에 따라 2014. 12. 31. D공사에게 이 사건 매매잔금 2,310,139,800원을 지급하였다.

○ 2016. 8. 5.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준공인가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각 용지는 I 공장용지 7,162.9㎡, J 공장용지 8,485.1㎡, K 공장용지 8,599.3㎡, L 공장용지 7,542.2㎡(면적 합계 31,789.5㎡)로 그 지번과 면적이 확정되었다(이와 같이 증감된 면적 등에 따라 이 사건 매매대금도 정산되어 원고는 D공사로부터 1,222,688,490원을 돌려받았다).

○ D공사는 위와 같이 지번과 면적이 확정된 이 사건 각 용지에 관하여 2016. 12. 2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2017. 1. 16.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다만, 등기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4-12

상 매매일자는 '2010. 10. 28.'로 되어 있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관련 지방세 감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용지가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은 법률에 따라 이 사건 각 용지에 관한 취득세 및 그에 연동된 지방교육세를 면제받았고, 이 사건 각 용지에 관한 2015~2018년분 재산세와 그에 연동된 지방교육세를 경감받았다.

○ 취득세 면제

▸ 계약금 관련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달리 정함이 없이 '구 지방세법'이라고만 하면 이와 같다) 제276조 제1항 본문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10. 3. 31. 법률 제10220호) 제3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됨]

▸ 중도금 및 잔금 관련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달리 정함이 없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고만 하면 이와 같다) 제78조 제4항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

○ 재산세 경감

▸ 2015~2017년분 50% 경감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1호 가목, 제2호 다목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14. 12. 31. 법률 제12955호) 제25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됨]

▸ 2018년분 35% 경감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달리 정함이 없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고만 하면 이와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4-12

제78조 제4항 제1호 가목, 제2호 다목

○ 지방교육세 감면 : 구 지방세법(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달리 정함이 없이 '지방세법'이라고만 하면 이와 같다) 제151조 제1항 제1호 나목 1)(취득세 연동), 같은 항 제6호(재산세 연동)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에 연동되어 위와 같이 취득세, 재산세가 감면됨으로써 함께 감면됨

나. 이 사건 각 건물의 취득 및 관련 지방세 감면

1) 이 사건 각 건물의 취득 및 임대

○ 원고는 2017. 12. 29. 이 사건 각 용지 지상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2층 공장 1층 990㎡, 2층 144㎡인 두 동의 건물(M동, N동, 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2018. 2. 19. 착공을 하여 2018. 8. 2. 사용승인을 받고 2018. 8. 2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2018. 8. 2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가 정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회사 O(이하 'O'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8. 30. O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하였다.

2) 관련 지방세 감면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이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신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은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취득세와 그에 연동된 지방교육세를 경감받았다.

○ 취득세

▸ 50% 경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

▸ 추가 25% 경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8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4-12

제8조 제1호

○ 지방교육세 경감 :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나목 1)에 따라 취득세에 연동되어 위와 같이 취득세가 경감됨으로써 함께 경감됨

다. 피고의 과세처분

1) 이 사건 각 용지 관련

○ 피고는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각 용지를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제78조 제5항의 규정은 동일하므로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제78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2019. 1. 11. 원고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과처분 중 계약금 관련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같이 이 사건 각 용지와 관련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및 그에 연동된 지방교육세(구 지방세법 하에서는 지방교육세가 등록세에 연동되었기 때문에 계약금과 관련된 취득세에 연동된 지방교육세는 없다)를 추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2019. 4. 4. 원고에게 별지 제2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용지와 관련하여 감면받은 재산세와 그에 연동된 지방교육세를 추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또한 피고는 '원고가 2010. 12. 28. 계약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각 용지 중 그 계약금에 상응하는 부분을 연부취득하였음에도 2017. 1. 16. 이 사건 각 용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그 연부취득 부분에 대한 등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부칙(2010. 3. 31. 법률 제10221호) 제6조(이하 '이 사건 경과규정'이라 한다), 구 지방세법 제124조, 제151조 등에 따라 2019. 1. 11. 원고에게 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4-12

지 제1 목록 기재 부과처분 중 계약금 관련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부분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금에 상응하는 연부취득 부분에 관한 등록세 및 그에 연동된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등록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각 건물 관련

○ 피고는 2019. 1. 24.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각 건물과 관련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37,359,710원(가산세 포함) 및 그에 연동된 지방교육세 1,850,680원(가산세 포함)을 2019. 2. 28.까지 신고·납부할 것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9. 2. 28. 그에 따른 신고·납부를 하였다.

○ 피고는 2019. 3. 22. 원고에게 위와 같이 자진납부한 세액이 추징할 세액과 동일하다는 취지의 세액결정통지(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두6633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두60898 판결 등에 의하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하 '이 사건 세액결정통지'라고 하고,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 '이 사건 등록세 등 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1, 17, 23~30호증, 을 제2, 5, 6, 12,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및 판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4-12

가. 이 사건 취득세, 재산세 등 부과처분 관련 3년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의 존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매매잔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준공인가가 지연되어 원고는 그 준공인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사건 각 용지를 사용할 수 없었다. 또한 원고는 당초 조선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용지를 분양받은 것인데, 이 사건 각 용지는 조선업을 영위하기에 부적합하게 조성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용지를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추징을 배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취득세,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관련 법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금지 ·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2두1175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감면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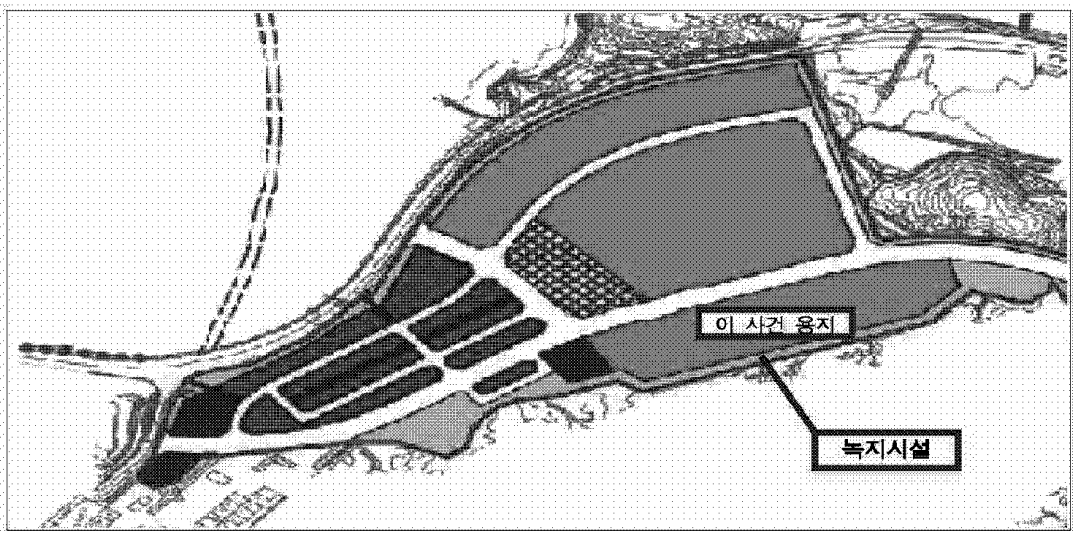
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 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0213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9, 20, 31, 32호증, 을 제1, 7, 8,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원고는 2009. 12. 11. 경기도지사에게 이 사건 산업단지 입주희망 협조요청서를 보냈는데, 그 협조요청서에는 희망업종이 '선박건조 및 선박수리업, 선박임대업', 희망위치가 '선박건조 및 진수가 가능하고 선박 접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위치'라고 기재되어 있다.

○ 2010. 9. 9. [redacted]도 고시 S로 '이 사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가 이루어졌는데, 그 고시에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용지와 해안 사이에 녹지시설이 설치될 것이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4-12

○ 원고는 2010. 12. 28. D공사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 원고는 그 특약사항과 같이 이 사건 각 용지의 입지여건 등을 직접 확인하고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목적용지의 조성상태, 현황 및 설계(형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 기타 토지이용 장애사항 등), 사업지구내외의 입지여건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3항).

▸ 토지사용 시에는 산업입지법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과 관리기본계획, 환경·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을 반드시 확인 및 준수하여야 한다(8항).

○ 그 후 원고는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등 이 사건 매매대금을 순차로 지급할 때마다 피고에게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였는데, 그때마다 피고는 원고에게 감면 통지를 하면서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받은 취득세액을 추징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함께 고지하였다.

○ 원고 측의 이 사건 매매계약 담당자는 1차 중도금 납부 이후인 2012. 2. 20. D공사를 방문하여 "조선업 경기가 침체되어 계약을 승계할 매수인을 구하고 싶으나,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는 매수면적을 1/4 정도로 축소하고 싶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4-12

하였고, 이에 대하여 D공사 측 담당자는 "원고 매수 부분이 요지이고, 추후 가격상승 가능성이 높으니 축소는 재고하고 승계할 업체를 찾아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원고 측에서 위 협의내용을 정리한 문서(갑 제32호증)의 결론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계약 해지시는 계약서상 명시된 계약금 손실이 불가피한 실정. [redacted]도 [redacted] 시 방문 결과 타 도시에 비해 동시다발적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타 도시에 비해 수도권 투자자들이 많이 운집되고 있으며 토지가가 3년에 걸쳐 3배 정도 상승된 것으로 파악되었음.』

○ 원고 측의 이 사건 매매계약 담당자는 2014. 10. 22. 이 사건 각 용지의 현장을 방문하였는데, 그 방문결과를 정리한 문서(갑 제19호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0. 당사 분양받은 토지 전면 해상부에는 피복석으로 마감처리되어 있고 그 이면에는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고, 산책로 이면에 완충녹지가 조성되어 있음. (B공사에서 완충녹지와 산책로를 없애려고 설계 변경 요청을 하였으나 변경되지 않음)

13. 현재 [redacted]시에서 각종 기반시설 택지지구 등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전국 단위로 보면 [redacted]시의 지가가 제일 많이 상승하고 있는 실정.

14. 분양받은 토지 여건상 산책로 완충녹지가 해안선에 위치하여 조선대 설치는 불가능한 상태임.

17. 간조시 수심이 없고 하부 뻘층이 육안으로 바닥이 드러나는 실정이므로 준설을 하지 않으면 선박 운항이 불가함.』

○ 원고는 2014. 12. 31. D공사에 이 사건 매매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4-12

○ D공사는 2015. 1. 14. 원고에게 준공인가 전 사용신청 절차를 안내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6. 8. 5.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준공인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D공사에게 준공인가 전 사용신청을 하지 않았다.

○ 원고는 2017. 2. 15.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질의(이하 '이 사건 질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각 용지에 2017년 상반기 중 공장건축을 할 계획입니다. 공장 건축 후 산업단지 지구단위 계획에 부합하는 업종으로 제3자에게 임대를 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2. 1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등록에 관한 법률 및 F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공장건축과 설비완료 이후 공장설립완료 신고와 완료승인을 득한 후, 해당 필지에 입주 가능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30, 31)에 한하여, 임대신고와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 절차를 통하여 임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원고는 2017. 12. 29. 이 사건 각 용지 지상에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2018. 2. 19. 착공을 하여 2018. 8. 2. 사용승인을 받았다.

4)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 원고는 선박건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용지를 분양받았으나, 이 사건 각 용지와 해안 사이에 완충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등 실제 이 사건 각 용지를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4-12

○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고시된 이 사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이미 이 사건 각 용지와 해안 사이에 녹지시설이 설치될 것이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각 용지의 입지여건 등을 직접 확인하고서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용지에서 선박건조업 등을 영위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사정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특히 원고는 2014. 10. 22. 현장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각 용지에서 선박건조업 등을 영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음에도 2014. 12. 31. D공사에게 이 사건 매매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각 용지를 취득(연부취득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최종 취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였는데, 위 현장조사 결과를 정리한 문서나 2012. 2. 20. D공사에서의 협의내용을 정리한 문서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용지를 취득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시세차익 등 여러 경제적 이해득실을 따져 이 사건 각 용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용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이 사건 각 용지에서 선박건조업 등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이상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당하지 않도록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즉 2017. 12. 31. 이내에 이 사건 각 용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하였어야 함에도(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감면 통지를 할 때마다 위와 같이 추징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라고 고지하였다), 원고는 그 취득일로부터 2년 2개월이 지난 2017. 2. 15.에야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방법을 질의하였고, 2017. 2. 17. 피고로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4-12

터 이 사건 회신을 받았음에도 즉시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에 들어가지 아니한 채 2017. 12. 29.에야 건축허가를 받아 2018. 2. 19. 착공을 하여 2018. 8. 2. 사용승인을 받았다.

착공에서 사용승인까지 6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회신을 받은 즉시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을 하였다면 2017. 12. 31. 이전에 사용승인[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한 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시점이 해당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시점이 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두3319 판결 등 참조)]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매매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1년 8개월 정도가 지난 2016. 8. 5.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준공인가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원고는 그 준공인가 전이라도 산업입지법 제37조 제7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D공사에게 준공인가 전 사용신청을 하여 사용승낙을 받아 이 사건 각 용지를 사용할 수 있었고, 실제 D공사가 이 사건 매매잔금 지급 직후인 2015. 1. 14. 원고에게 위와 같은 준공인가 전 사용신청 절차를 안내하였음에도 원고는 그와 같은 신청을 하지 않았다.

나)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용지를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원고가 이 사건 각 용지를 위와 같이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등록세 등 부과처분 관련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는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4-12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구 지방세법상 등록세의 납세의무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용지에 관하여 2017. 1.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등기 시에 시행되던 지방세법에서는 등록세가 폐지되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는 등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 이 사건 경과규정[지방세법 부칙(2010. 3. 31. 법률 제10221호) 제6조]은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에 규정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로서 이 법 시행 후에 그 물건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에서 의미하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라고 해석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2010. 12. 28. 계약금을 지급한 때 원고는 이 사건 각 용지를 등기할 수 없었으므로, 당시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 이 사건 매매계약금이 지급된 2010. 12. 28.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지방세법에서는 등록세와 면허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된 지방세법이 2011. 1. 1.부터 시행되면서 세목 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해 취득과 관련된 등록세의 과세대상을 취득세의 그것에 통합하고 이러한 통합 취득세의 세율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그것들을 합산한 것으로 조정하였으며, 취득과 관련이 없는 등록세의 나머지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목인 등록면허세를 신설하였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두47403 판결 등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4-12

○ 위와 같이 세목 체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세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이 사건 경과규정이 마련되었다. 이를 상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 전에 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취득하고 그에 따른 등기·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그 취득 시점 및 등기·등록 시점에 시행 중이던 구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누9253 판결 등 참조)].

▸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 후에 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취득하고 그에 따른 등기·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그 취득 시점 및 등기·등록 시점에 시행 중이던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기존 등록세를 포함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 그런데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 전에 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취득하고 그 시행 후에 등기·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그 취득 시점에 시행 중이던 구 지방세법에 따라 등록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한편, 등기·등록 시점에 시행 중이던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취득과 관련된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어 폐지된 상태여서 이를 과세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한다.

▸ 이러한 과세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에 규정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로서 이 법 시행 후에 그 물건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를 진다."라는 이 사건 경과규정이 마련되었다.

○ 한편,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4-12

조 제7항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7항의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는 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구 지방세법령에 '연부'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은 없었지만, 일반적으로 "대금을 매년 일정액씩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되 그 대금지급기간이 최소한 2년 이상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고(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3170 판결 등도 이와 같은 해석을 전제하고 있다), 그 후 지방세법이 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면서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정의 규정이 신설되었다(제6조 제20호).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경우 그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취득은 연부취득에 해당한다. 그에 따라 원고도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등 각각의 대금을 지급할 때마다 그 대금지급액(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4-12

면제신청을 하였다.

○ 위와 같은 이 사건 경과규정의 취지와 취득세의 과세표준 및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경과규정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에 규정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란 '이 법 시행 전에 구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즉, 등록세가 포함되지 않은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를 의미하고,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구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 위와 같은 해석을 바탕으로 보건대, 원고는 위와 같이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 전인 2010. 12. 28. 이 사건 매매계약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매매계약금을 과세표준으로 한 구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과규정에서 말하는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에 규정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에 해당한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 중 2015년, 2016년분 재산세 등 관련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재산세는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데, 원고는 이 사건 각 용지에 관하여 2017. 1.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전에는 이 사건 각 용지에 관한 사용·수익권 및 처분권을 갖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2015년, 2016년에 이 사건 각 용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 중 2015년, 2016년분 재산세 등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2) 관련 법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4-12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정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한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980, 299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 원고는 2014. 12. 31. D공사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각 용지에 관한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고(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 제1항,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두18018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준공인가 지연으로 인하여 실제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2017. 1. 16. 마쳤다.

○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이후에도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준공인가 전까지는 산업입지법 제37조 제7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각 용지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지만, 한편으로 원고는 같은 조항 단서 및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D공사에게 준공인가 전 사용신청을 하여 그 사용승낙을 받아 이 사건 각 용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점(실제 이 사건 산업단지에서 위와 같이 준공인가 전 사용신청을 하여 사용승낙을 받은 업체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D공사로서는 원고의 준공인가 전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 산업입지법 제37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이 사건 각 용지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4-12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었던 점(산업입지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준공인가 전까지 이 사건 각 용지에 관한 원고의 사용·수익권이 일부 제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사용·수익권 자체가 없었거나가 원고가 실질적으로 사용·수익권을 가지지 못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10조는 "잔금 납부약정기일 이후의 조세 및 공과금은 D공사의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원고가 매매대금 완납 전에 D공사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득한 때에는 그 토지 사용승낙일을 위 최종 잔금 납부약정일로 본다."라고 정하였는데, 이러한 매매계약서의 내용도 잔금 지급 이후에는 이 사건 각 용지의 사용·수익권이 원고에게 이전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9조 제1항 제3호에서 "원고가 목적용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기 전에 D공사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였을 때에는 D공사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용지의 처분권이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산업입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단지 내의 용도가 지정된 토지를 분양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원고와 D공사가 일정기간 원고의 처분권을 제한하는 약정을 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그렇다고 하여 D공사에게 이 사건 각 용지를 처분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용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기 전까지 이 사건 각 용지에 관한 원고의 처분권이 제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처분권 자체가 없었거나가 원고가 실질적으로 처분권을 가지지 못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5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4-12

2016년에 이 사건 각 용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이 사건 세액결정통지 관련 신뢰호보원칙 위반 여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질의[앞서 본 3의 가. 3)항 참조]는 단순히 이 사건 각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을 임대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세법적인 문제를 포함한 행정 전반의 문제가 없는지에 관하여 묻는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회신[앞서 본 3의 가. 3)항 참조]을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을 중소기업자가 아닌 법인에 임대하였을 때 취득세 등이 추징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적시하지 않았다. 이는 원고가 제3자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임대하더라도 취득세 등이 추징되지 않을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그 견해표명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세액결정통지는 위법하다.

2)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9103 판결 등 참조).

3) 판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4-1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질의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용지에 공장을 건축하여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묻는 내용이었을 뿐 제3자에게 임대할 경우 취득세 등이 추징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묻는 내용은 아니었고, 이 사건 회신도 입주 가능한 업종에 한하여 위와 같이 임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일 뿐 제3자에게 임대하더라도 취득세 등이 추징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아니었으며, 달리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은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이 사건 각 처분 관련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의 존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세법에 문외한인 원고로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이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등기를 하면서 구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등을 알기 어려웠다. 특히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더라도 취득세 등이 추징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이 사건 회신을 신뢰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와 관련된 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모두 위법하다.

2)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4-12

고 2016두4439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은 그 자체로 법령의 부지 · 착오 등에 해당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취득세 등의 감면 통지를 할 때마다 일정기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하라고 고지하였던 점, 이 사건 회신을 원고의 주장과 같은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와 관련된 본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4-12

제1 목록

(이 사건 취득세, 등록세 등 부과처분)

과세대상	처분일자	세목	세액
계약금	2019. 1. 11.	취득세	41,995,340원(가산세 9,777,960원)
		등록세	45,668,130원(가산세 13,450,750원)
		지방교육세	7,844,920원(가산세 1,401,450원)
1차 중도금	2019. 1. 11.	취득세	83,955,270원(가산세 19,520,500원)
		지방교육세	7,106,820원(가산세 663,360원)
2차 중도금	2019. 1. 11.	취득세	167,910,580원(가산세 39,041,030원)
		지방교육세	14,213,660원(가산세 1,326,710원)
3차 중도금	2019. 1. 11.	취득세	167,910,580원(가산세 39,041,030원)
		지방교육세	14,213,660원(가산세 1,326,710원)
4차 중도금	2019. 1. 11.	취득세	167,910,580원(가산세 39,041,030원
		지방교육세	14,213,660원(가산세 1,326,710원)
잔금	2019. 1. 11.	취득세	118,673,570원(가산세 27,592,880원)
		지방교육세	10,045,730원(가산세 937,670원)
합계			861,662,500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4-12

제2 목록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

과세대상	처분일자	세목	세액
[redacted]도 [redacted]시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2019. 4. 4.	2015년분 재산세	12,229,470원
		2015년분 지방교육세	2,445,890원
		2016년분 재산세	14,350,230원
		2016년분 지방교육세	2,870,050원
		2017년분 재산세	15,413,220원
		2017년분 지방교육세	3,082,640원
		2018년분 재산세	18,778,610원
		2018년분 지방교육세	3,758,050원
합계			72,928,160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4-12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4조 (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30조 (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제15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260조의3 (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4-12

구분	과세표준	표준세율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	100분의 20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 구 지방세법(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각 호 생략)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취득물건(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4-12

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감면조례(이하 "지방세감면법령"이라 한다)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1)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취득세의 감면율을 정하는 경우: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을 해당 취득세 감면율로 감면하고 남은 금액

6.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 지방세법 부칙(2010. 3. 31. 법률 제10221호)

제6조(등록세 등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에 규정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로서 이 법 시행 후에 그 물건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4-12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 감면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4-12

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⑧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제4항제2호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10. 3. 31. 법률 제10220호)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법」의 규정(종전의 「지방세법」 제9조에 따른 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14. 12. 31. 법률 제12955호)

제25조(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제7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78조제4항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대수선하려는 자가 제78조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4-12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

■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제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제8항에 따라 추가로 경감하는 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78조제4항제2호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100분의 25
2. 법 제78조제4항제2호나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100분의 15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제16조제1항제3호 중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는 제외한다)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준공인가전 토지등의 사용)

①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한다) 등의 분양을 받은 자는 법 제37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전에 용지 또는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정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전 사용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그 용지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인가전 사용의 대상이 되는 용지 또는 시설물중 국·공유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양도되는 국·공유재산으로서 무상 귀속·양도에 관하여 미리 관리청과 협의를 완료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소유권을 미리 취득하게 하여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4-12

1. 전기·통신 또는 가스 등의 공급업자가 신청인의 입주 또는 공장 등의 가동시기(이하 "입주시점"이라 한다)에 맞추어 전기·통신 또는 가스 등의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확인하는 경우
2. 관할 시장·군수가 입주시점까지 도로의 소통 및 상수원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경우
3. 공해배출업체가 입주하는 경우로서 하수·폐수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가동이 입주시점까지 곤란하고 대체처리 계획의 수립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이하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끝.